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진영 의원(공동발의자 9명)

나. 의안번호 : 제 1197 호

다. 발의일자 : 2016. 5. 27.

라. 회부일자 : 2016. 5. 31.

2. 제안이유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대부분이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조성되어 노후시설 비율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10년 후 30년 이상 노후시설이 5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실태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성능개선, 장수명화 등에 관하여 정의(안 제2조).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안 제3조).

- 라.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 마. 노후기반시설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사·평가 후 실태평가보고서를 최초로 작성하고 5년마다 갱신(안 제5조, 부칙 제2조).
- 바.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토대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안 제6조).
- 사. 종합관리계획, 실태평가보고서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능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안 제7조).
- 아. 실태평가보고서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전담추진반 구성·운영(안 제8조).
- 자. 시장은 종합관리계획이 수립 또는 갱신되는 경우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안 제9조).
- 차. 성능개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안 제10조).
- 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별첨

5. 검토의견

■ 제정안의 취지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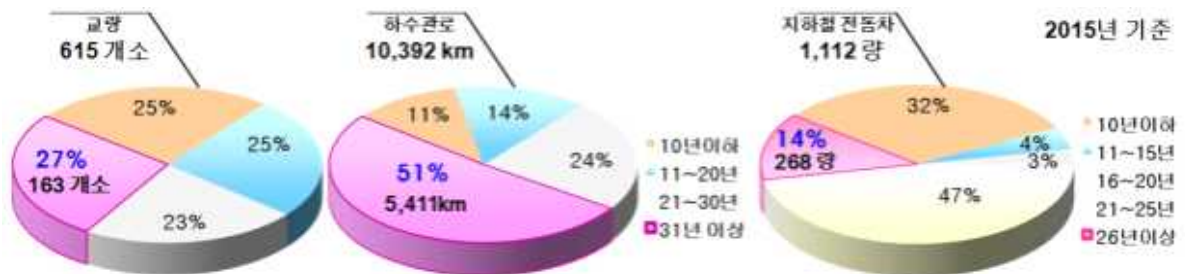
- 본 제정안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의 사용연수 증가에 따른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실태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촉진시키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제정안 주요골자

목 차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서울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제2조(정의)	-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성능개선, 장수명화, 생애주기비용, 잔존수명
제5조(실태평가보고서 작성)	- 최초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후 5년마다 갱신. (포함내용: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이용수요의 변화와 미래예측, 내구성능 및 구조성능 변화와 현황, 유지관리 이력 및 현황, 잔존수명 평가, 피해영향평가,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의 필요성 판단과 미래가치, 소요 재정규모 등)
제6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후 6개월 이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 (포함내용: 노후기반시설의 관리 기본계획,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기본계획,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 투자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
제7조(성능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 위원장 1명(시 관계부서의 본부장), 부위원장 2명(시 관계부서의 국장, 시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 간사 1명(시 관계부서의 과장) 임명. - 위원장이 위원회의 구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산.
제8조(전담추진반 구성 및 운영)	-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담추진반을 구성·운영토록 함.
제9조(의회보고)	- 종합관리계획이 수립 또는 갱신되는 경우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서울시 주요 기반시설물의 상당수는 1970~19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조성되면서 최근 들어 노후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고, 노후화에 따른 위험도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
- 현재 서울시 주요 기반시설물 중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을 살펴보면, 교량의 경우 27%, 하수도의 경우 52%를 차지하며, 도로의 경우 보수가 필요한 SPI¹⁾ 6이하 구간은 36%(SPI 조사구간 5,671.8km, 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림] 참조),
- 이 같은 현황에 근거해 볼 때 약 10년 후에는 30년 이상된 노후시설 비율이 5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반시설물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당시 적용되었던 설계 및 시공 기준은 현 시점의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현재 기반시설물 사용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무한정 담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그림] 서울시 노후기반시설물 현황(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16.1.29.)

1) Seoul Pavement Index: 서울시 포장상태 평가지수

- 이처럼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고, 기반시설의 요구 성능 또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한계 등의 이유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음.
- 이에 서울시는 노후 기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6년 3월 “도시기반시설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서울시의 “도시기반시설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객관적이며,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 적정 규모의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최적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설물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제정안은 이러한 일시적인 대책마련을 뛰어넘어 장래 지속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노후기반시설물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노후기반시설물에 대한 실태 평가를 바탕으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음.
 - 따라서, 본 제정안은 노후기반시설 증가에 대비해 기존의 사후보수 개념이 아닌 사전예방 및 미래지향 차원의 체계적인

성능개선과 장수명화 계획을 수립해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서울시 노후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주요사항 검토

1) 정의 규정(안 제2조 관련)

- 안 제2조에서는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성능개선, 장수명화 등의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후기반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주체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시설물과 간선 이상의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제2호의 유지관리 중에 미래의 수요변화 및 다양화에 대응하여 노후기반시설의 제원이나 성능 및 효율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4. “장수명화”란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노후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연장하기 위해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서 구조 및 내구 성능을 해당 시설물 전반에 대해 사전 정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5.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6. “잔존수명”이란 시설물의 구조성능과 내구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 예측한 남아있는 내용연수를 말한다.

- 먼저, 제1호의 노후기반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과 간선 이상의 하수관로²⁾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음.

2) 하수관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종 또는 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로 하수도 관련해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2종시설물에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5³⁾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용연수 하한을 30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제정안에서 구조물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시점(30년)을 노후기반시설물의 판단 기준으로 한 것은 적절하다 사료됨.
- 또한 제2호부터 제4호는 유지관리, 성능개선, 장수명화에 대해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 “유지관리”는 일상적인 점검·정비에 의해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인 반면,
 - “성능개선”은 장래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 구조적 성능 또는 용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교량에서 설계하중 DB18이었던 것을 DB24로 향상시키거나 교통용량 증대로 차로수를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 “장수명화”는 내용연수 연장을 위해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 해당 시설물 전반에 대해 예방적 정비를 하고자 하는

3)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것으로, 겉으로 드러난 손상 뿐만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열화 부분까지 시설물 전반에 걸쳐 정비함으로써 그 보수·보강효과를 극대화하여 장기간 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

- 따라서, 본 제정안은 손상 발생 시 손상정도에 따라 해당 부위에 집중하여 사후 보수하는 기존 일대일 대응 유지관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주변여건 및 사용용량의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구조성능 개선과 해당 시설물 전반에 대해 잠재적 열화까지 치유함으로써 수명을 크게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2)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안 제5조, 부칙 제2조 관련)

- 안 제5조에서는 노후기반시설에 대해 시설물별로 제1호에서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조사·평가하여 안 부칙 제2조에 의거 2019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마다 이를 갱신토록 하고 있음.

제5조(실태평가보고서 작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기반시설(이하 ‘노후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별로 조사·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마다 갱신한다.

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2. 이용수요(또는 용량)의 변화와 미래예측
3. 내구성능의 변화와 현황
4. 구조성능의 변화와 현황
5.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과 현황
6. 잔존수명 평가
7. 만일의 붕괴나 운영중단 등에 따른 피해영향 평가
8. 성능개선의 필요성 판단(필요시 기본계획 포함)
9. 장수명화의 필요성 판단(필요시 방안제시 포함)
10.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에 따른 미래가치
11. 준공이후 투입 재정내역 및 성능개선·장수명화를 위한 소요 재정규모
12.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 제6조부터 제7조의2까지에 의해 시행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간한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현행법 제3조4) 및 제4조5)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법정 주기에 따라 시행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발생한 손상을 손상정도에 우선순위를 두어 보수·보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 본 제정안의 실태평가보고서는 이와 별개로 진행되면서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시설물의 성능개선과 장수명화를 위한 5년 단위의 시설물 정보이력서, 즉, 차트(chart)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실태평가보고서에는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이용수요 변화와 미래예측, 내구성능 및 구조성능의 현황,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 이력,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미래가치, 소요 재정규모 등을 포함토록 하고 있는데,

4)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이는 기존 시설물 관리가 현상태의 안전성 평가에 치중했다면 본 안의 실태평가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수요의 변화와 미래예측을 비롯하여 준공 이후 지금까지의 내구 및 구조성능의 변화 이력, 유지관리이력 등의 체계적인 이력을 담게 되며,
 - 이는 해당 시설물의 차트가 되어 시설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중요한 이력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성능개선 또는 장수명화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제2항은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시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중복적인 조사를 회피하면서 부족한 것만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3)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안 제6조 관련)

- 안 제6조는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를 토대로 6개월 이내에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토록 규정하면서, 종합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제6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기반시설의 관리 총괄현황
2.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기본계획

- 3.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
- 4. 노후기반시설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 5.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성능개선·장수명화 관련 연구·개발 투자계획
- 6.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6조제2항에서 종합관리계획은 노후기반시설 관리 기본 계획,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 투자우선순위 선정, 연차별 투자 계획, 연구·개발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 실태평가 보고서가 노후기반시설의 개별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종합관리계획은 실태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이 들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총괄적인 평가와
 - 실태평가에서 성능개선 또는 장수명화 필요시설로 선정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중장기재원 확보방안에 기초하여 투자우 선순위와 연차별 투자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 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과 장 수명화 촉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여겨짐.

4) 성능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관련)

- 안 제7조에서는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성능개선위 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7조(성능개선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이하 '성능개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2. 시 관계 공무원
3. 기반시설 건설·유지관리등 관련 산업체·학교·연구기관 전문가
4. 기반시설 건설·유지관리등 관련협회 전문가
5. 기타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에 기여한 사람

③ 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관계부서의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시 관계부서의 국장과 시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간사 1명은 위원장이 관계부서 과장 중에 지명한다.

④ 성능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
2. 제6조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
3. 그 밖에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⑤ 성능개선위원회가 노후기반시설의 현장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시장은 원활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성능개선위원회의 구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성능개선위원회 의결로 해산한다.

○ 제2항에서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시 관계 공무원, 관련 분야 산업체·학교·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의 4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

- 본 조례안의 대상 시설물(「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⁶⁾)이 교량, 터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공동구 등((별첨) 참조)으로 다양하므로
- 각 분야별 전문가, 입법기관(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과 행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란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정기관(시 관계 공무원)의 대표 또는 관계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균형 있는 심의 또는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또한, 제3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관계부서의 본부장으로, 그 외에 부위원장 2명을 각각 관계부서와 재정부서의 국장으로, 간사를 관계부서의 과장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 부위원장에 시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을 포함시킨 것은 종합관리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적인 현실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바람직하다 하겠음.

5) 전담추진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관련)

-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이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전담추진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8조(전담추진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시 산하 각 관계부서(시 산하 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의 담당자 등으로 전담추진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추진반의 반장은 제7조제3항의 간사가 된다.

-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시 소관 대상시설물의 종류가 다양하여 그에 따른 소관 실국도 안전총괄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교통본부, 주택건축국 등(투자기관 포함) 다양하기 때문에,

- 여러 실국을 아우르는 한시적인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은 원활한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 다만, 안 제8조가 재량규정으로 전담추진반의 구성·운영권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시장의 조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바,
 -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전담추진반”을 “실무협의회”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종합의견

- 현재는 물론 앞으로 서울시 노후기반시설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사후보수 개념이 아닌 사전예방 및 미래지향 차원의 보다 효율적인 성능개선과 장수명화를 위해 해당 시설물별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 이를 바탕으로 재정확보 및 투자에 기초를 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노후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고, 선진적인 조례라 할 것임.
 - 다만,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및 종합관리 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잔존수명 평가 등의 기술적 또는 공학적인 한계점은 아직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 본 조례안의 제정을 계기로 기술적, 공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또는 공학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참고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9.12.31일까지 실태 평가보고서 작성과 6개월 뒤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 2017회계연도 예산편성에서 안 제5조의 실태평가와 안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범위, 추진 방법, 추진체계, 추진전략, 시행예산 등을 세우기 위해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소요예산(성능개선위원회와 전담추진반 운영예산 포함)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범위

[붙임]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법 제2조제1항 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p>1. 교량</p> <p>가. 도로교량</p> <p>나. 철도교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p>2. 터널</p> <p>가. 도로터널</p> <p>나. 철도터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갑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문시설 	
나. 방파제, 파 제제 및 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1,000미터 이상인 방파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다. 계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 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p>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 시설 · 일반철도역사 · 공항청사 · 항만여객터미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구둑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마. 배수펌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 (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구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갑문, 방과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
6.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7.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8.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9.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1.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2.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3.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4.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5.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6.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7.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9.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0. "배수펌프장"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배수펌프장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배수장을 말하며, 빗물펌프장을 포함한다.
21.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 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2.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한다.